

瑞山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檢 討 報 告

1. 發 議 者 : 박영웅의원의외 6인

2. 發議日字 : 1998. 8. 19

3. 改正理由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 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
- 상호 불부합되는 일부 조항과 의회 상황 변화등에 충족되지 못하는 규정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4. 主要骨子

- 의원 당선인은 당선 증서를 제시하고 등록 하도록 함(안 제2조)
-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안 제9조).
-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안 제9조)

-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 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함(안 제11조)

5. 檢討意見

- 본 개정 규칙안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행규칙 제9조 제2항(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의 삭제로 인하여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대표성 공백과 의정활동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